

[서식 예] 부동산 명도(인도) 청구의 소(단독주택, 층 전부, 최선순위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임치인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건물인도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취득경위
- 가. 원고는,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각 제1번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 식회사 ◈◆은행이 신청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타경○○○ 부동산경매사건에 서 매수신고하여,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를 금 ○○○원에 매수하여,



20 ○ ○ . ○ .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.

나. 위 각 부동산들의 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는 신청외 주식회사 ◈◈은행의 제1번 근저당권에 앞서는 용익물권이 전혀 없었고, 갑구에도 신청외 주식회사 ◈◈ 은행의 제1번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의 가등기·가처분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, 원고는 위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.

2.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

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전 소유자 소외 ■■■로부터 임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인바,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원만히 돌려 받기 어렵게 되자,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에 있어서도 이사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점유부분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	매수신고서
1. 갑 제2호증	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1. 갑 제3호증	건축물대장등본
1. 갑 제4호증	내용증명
1. 갑 제5호증	사실확인서

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방법각 2통1. 토지대장등본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 20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
 (서명 또는 날인)



[별 지]

부동산의 표시

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

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200㎡. 끝.

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 용	용 · 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 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및 기 간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